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1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군 발주 공사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나. 불필요한 서류제출 조항 삭제하여 규제 개선함(안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다. 공사시행의 통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

(현행) 군수는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설) 읍면장은 통보받은 공사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2014.5.23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 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사항: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2. 17. ~ 3. 0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감독”이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통보받은 공사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